

제2장

사회적 법익

차별 금지

범죄 묘사

성관련 보도

자살 보도

마약 및 약물 보도

폭력 묘사

충격·혐오감

기사와 광고의 구분

기사 제목



제2장

사회적 법익

사례 15 차별 금지 - 집단 차별 표현

의결번호	제2023-768호	매체명	위키�트리(Wikitree)
대상보도	위키텍트(Wikitree) 2023년 07월 25일 사회면 「맘충 ‘악성 민원’으로 문 닫은 소아과 원장, 직접 등판했다 (ft. 사이다 결말)」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금지)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공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폐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폐업사유로 밝힌 악성민원 경위를 보도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을 비하 내지 경멸하는 표현을 기사 제목으로 사용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차별 금지) ①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권고 이유

해당 인물의 행태가 사회적으로 적절치 않았다 하더라도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 혹은 경멸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집단 간 혐오와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커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맘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였다.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맘충 ‘악성 민원’으로 문 달은 소아과 원장, 직접 등판했다 (ft. 사이다 결말)	맘충 ‘악성 민원’으로 문 달은 소아과 원장, 직접 등판했다 (ft. 사이다 결말)

사례 16 차별 금지 - 국적 차별 표현

의결번호	제2023-435호	매체명	원픽뉴스
대상보도	원픽뉴스 2023년 05월 08일 사회면 「“사진 보고 중국인 줄”.. 상자에 아기 넣은 채 오토바이 주행하는 ‘소름 돋는’ 모습에 누리꾼 ‘발칵」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금지)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특정 국적에 대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실제 아기를 상자에 담아 오토바이에 싣고 주행하는 위험한 모습이 국내에서 목격된 사실을 전하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 내지 경멸이 내포된 표현을 보도에 사용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차별 금지) ①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권고 이유

해당 보도가 화제가 된 사건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국적에 대한 편견 내지 경멸의 의미로 전달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국적 소지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더욱 조장할 우려가 커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특정 국가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사진보고 중국인 줄’이라는 표현을 ‘이게 우리 나라였어?’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 사진보고 중국인 줄 ”.. 상자에 아기 넣은 채 오토바이 주행하는 ‘소름 돋는’ 모습에 누리꾼 ‘발칵’	“ 이게 우리나라였어? ”.. 상자에 아기 넣은 채 오토바이 주행하는 ‘소름 돋는’ 모습에 누리꾼 ‘발칵’

사례 17 차별 금지 - 장애 차별 표현

의결번호	제2023-128호	매체명	인터넷 국민일보
대상보도	인터넷 국민일보 2023년 01월 30일 「'눈먼 돈' 청년전세대출」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0조의2 (차별금지)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장애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공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정부의 전세대출제도를 악용해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제도의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상황을 ‘눈먼 돈’에 빗대어 언급함으로써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은 표현을 제목으로 사용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의2(차별 금지) ①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권고 이유

해당 표현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용어가 있으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 내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에 관한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해당 표현의 사용을 삼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각종 보도준칙이나 자율강령 등에서 지양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기사제목에 사용한 표현은 장애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장애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눈먼’ 이라는 표현 대신 ‘서류 심사 허점 노린’이란 표현으로 기사 제목을 수정하였다.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눈먼 돈’ 청년전세대출	‘서류심사 허점 노린’ 청년전세대출

2023년 장애 차별 표현 시정권고 및 수용 사례

1. 시정권고 현황

(단위: 건)

장애차별	집단차별	국적차별	성 차별	나이차별	지역차별	합 계
274	4	3	3	1	1	286

2. 시정권고 표현

(단위: 건)

눈먼	결정 장애	장애를 앓다	병어리	선택 장애	외눈박이	절름 발이	합 계
228	14	11	10	5	4	2	274

3. 수용사례

장애차별 ㉠표현을 삭제 하거나 ㉡유사 어휘로 대체하는 경우. 또는 ㉢기존 제목을 직관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 눈먼

사례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①	‘보조금이 눈먼 돈?’ 곡성군, 체육분야 지원 관리 허술	‘ 보조금이 눈먼 돈? ’ 곡성군, 체육분야 지원 관리 허술
②	[사실] 글로벌 대학 지원금 3조원은 혈세, ‘눈먼 돈’ 대선 안 돼	[사실] 글로벌 대학 지원금 3조원은 혈세, ‘ 애먼 돈 ’ 대선 안 돼
③	‘눈먼 보조금’ 사업 176개 구조조정...‘역대 최고’ 수준	‘ 부정수급 시비 ’ 보조금 사업 176개 구조조정...‘역대 최고’ 수준

- 결정 장애

사례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①	기업공개 차질 빛는 케이뱅크, 서호성 강행·연장·철회 ‘결정 장애’ 이유	기업공개 차질 빛는 케이뱅크, 서호성 강행·연장·철회 ‘결정 장애’ 이유
②	“푸틴, 바그너 반란 당시 결정 장애 ...경고받고도 진압 지시 안해”	“푸틴, 바그너 반란 당시 우유부단 ...경고 받고도 진압지시 안해”
③	“뭐 먹을래?” “글쎄...” 결정 장애 가 우울증 전조증상?	“뭐 먹을래?” “글쎄...” 결정에 어려움 느끼는 게 우울증 전조증상?

- 장애를 앓다

사례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①	청주 용암동 아파트서 모친 흥기 살해한 10대 ‘자폐 앓아’	청주 용암동 아파트서 모친 흥기 살해한 10대 ‘자폐 앓아’
②	정신장애 앓는 친구 딸 성추행·신체 촬영 70대 징역 6년	정신장애 가진 친구 딸 성추행·신체 촬영 70대 징역 6년
③	장애 앓던 아기 숨지자 선산에 유기한 엄마 ‘검거’	다운증후군 아기 숨지자 선산에 유기한 엄마 ‘검거’

- 꿀 먹은 벙어리

사례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①	‘꿀 먹은 벙어리’ 였던 YG, 제니 ‘키스·반신욕’ 사진에 5개월만 사태 수습	‘꿀 먹은 벙어리’ 였던 YG, 제니 ‘키스·반신욕’ 사진에 5개월만 사태 수습
②	입도세 논란, 제주도정은 왜 꿀 먹은 벙어리 인가	입도세 논란, 제주도정은 왜 묵묵부답 인가
③	‘꿀 먹은 벙어리더니’ 때 늦게 공개토론 ... “기가 막혀”	‘침묵’하더니 때 늦게 공개토론 ... “기가 막혀”

사례 18 범죄 묘사 - 음란·포악·잔인 범죄 묘사 ①

의결번호	제2023-563호	매체명	커넥트뉴스(Connect News)
대상보도	커넥트뉴스(Connect News) 2023년 06월 07일 뉴스면 「[영상]여성 BJ, 길거리 폭행 생방송, 포크로 얼굴 찍었다.」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범죄묘사), 16조(폭력 묘사 등)		
권고사항	1. 대상보도 중 폭행사건의 범행 수법이 필요 이상으로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2. 대상보도 중 폭력 장면이 필요 이상으로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인터넷 개인방송 중 진행자 간 벌어진 노상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가해자가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폭행영상을 충분히 식별가능한 정도로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제1항 및 제16조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①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폭력 묘사 등)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고 이유

직접적인 폭행 순간의 영상 일부를 비식별조치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구체적인 가해행위는 여전히 식별가능하다. 이처럼 범행의 잔인성 내지 폭력성을 필요 이상으로 공표하는 것은 독자에게 정신적 충격 및 폭력에 대한 무감각 등 정서적 해악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폭력 장면 및 범행 수법이 필요 이상으로 묘사된 사진을 삭제하였다.

사례 19 범죄 묘사 - 음란·포악·잔인 범죄 묘사 ②

의결번호	제2023-642호	매체명	포스트쉐어(postshare)
대상보도	포스트쉐어(postshare) 2023년 07월 21일 「신림역 칼부림 범인 전과 17범 30대 남성... 사건 당시 끔찍한 CCTV 유출됐다 (+영상)」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2조 (범죄묘사)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범행 수법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한 부분이 식별되지 않도록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신림동 흥기난동 사건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가해자가 흥기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장면, 피해자가 저항하는 장면 등 사건의 CCTV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공표하여 「시정 권고 심의기준」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①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고 이유

범죄보도의 특성상 포악하거나 잔인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 전달 및 범죄의 심각성 고발 등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사건 전반의 경위나 발생원인 등 사건 자체를 전달하는 목적을 넘어 구체적인 범행 동작이나 잔혹함의 정도까지는 공익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필요 이상으로 공표하는 것은 독자에게 정신적 충격 및 폭력에 대한 무감각 등 정서적 해악을 미칠 우려가 커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

사례 20 성관련 보도 - 성 관련 선정적 묘사

의결번호	제2023-143호	매체명	뉴스시스(NEWSIS)
대상보도	뉴스시스(NEWSIS) 2023년 01월 02일 국제면 「성추행 아니라 일..여성 속옷 안까지 샅샅이 몸수색한 태국 경찰」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3조 (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성과 관련된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태국의 한 행사장에서 경찰이 입장객들에 대한 몸수색을 실시하던 도중 불거진 논란에 관해 보도하면서, 행사 경비원이 행사 참가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사진을 식별 가능하도록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제1항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성관련 보도) ①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고 이유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신체 접촉 당시의 장면을 노출하여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사진을 게재하여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사진을 비식별처리 하였다.

사례 21 자살 보도 - 자살자 신원 공개

의결번호	제2023-471호	매체명	매일안전신문
대상보도	매일안전신문 2023년 05월 10일 종합뉴스면 「원주시청 20대 공무원, 거제시 출장 중 리조트서 추락사」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사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출장 중 발생한 공무원의 자살 추정 사망사실을 보도하면서, 소속, 직급, 나이, 발령시기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 신상정보들을 함께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① 언론은 자살 보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권고 이유

기사의 내용이 공무 현장의 업무과중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을 다루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 자체가 아닌 사망자가 누구인지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라 할 수는 없다. 당사자 특정이 가능한 신상정보를 공표한 것은 당사자 및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사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보도한 나이, 직급, 업무내용, 발령시기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소속 부서를 수정하였다.

사례 22 자살 보도 - 자살 장소 및 방법 등 묘사

의결번호	제2023-395호	매체명	완두뉴스
대상보도	완두뉴스 2023년 04월 17일 뉴스면 「"SNS 생중계했다.." 빌딩에서 투신한 10대 여학생의 끔찍한 장면에 모두가 경악했다.」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자살 장소 또는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10대 여성이 SNS를 통해 자신의 투신 장면을 생중계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여성의 투신 전후 주요 장면을 공개하는 등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① 언론은 자살 보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의 묘사

권고 이유

기사가 정확한 사실 관계의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요지를 넘어 자살의 구체적 진행 과정이나 실행 당시의 현장 상황 등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공표하는 것은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일부 독자에게 자살 동기를 유발하거나 모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

사례 23 자살 보도 - 자살 미화 및 합리화

의결번호	제2023-656호	매체명	e머니에스(e money S)
대상보도	e머니에스(e money S) 2023년 06월 21일 「“짚값 치르려 해”... ‘거짓 암투병 논란’ ○○○, 숨진 채 발견」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4조 (자살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자살을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경연 프로그램 출신 유명 가수의 사망 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가수가 개인 커뮤니티에 남긴 유서 성격의 게시글 중 생전의 과오를 자살로써 속죄하는 취지의 문구를 여과 없이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3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③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고 이유

개인 커뮤니티에 올린 게시글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당사자가 속죄나 참회의 수단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이 자살을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삶의 위기에 노출된 일부 독자들에게 모방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속죄나 참회의 수단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삭제하였다.

사례 24 마약 및 약물 보도 - 약물의 환각상태 묘사

의결번호	제2023-325호	매체명	동아닷컴
대상보도	동아닷컴 2023년 03월 17일 사회면 「○○○ 손자, 방송 중 마약 투약... "살려주세요" 환각 난동」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5조 (마약 및 약물 보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약물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공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전직 대통령 일가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가 폭로 당시 유튜브 방송 중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투약으로 인한 환각상태를 충분히 식별 가능한 사진 및 환각증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 제2항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마약 및 약물보도) ② 언론은 약물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고 이유

해당 유튜브 영상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비식별처리를 하였더라도, 그 조치가 미흡하여 마약 투약 방법 및 약물 복용으로 인한 환각상태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보도하였다. 이는 미성년자 등 일부 독자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하거나 모방범죄를 초래하는 등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약물 사용으로 인한 당사자의 환각상태 사진을 삭제하였다.

사례 25 폭력 묘사 - 언어폭력 묘사

의결번호	제2023-152호	매체명	보리포스트
대상보도	보리포스트 2023년 01월 09일 핫이슈면 「삼성직원이 알려주는 걸러야할 여자 리스트 ㄱ」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6조 (폭력묘사 등)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언어폭력이 필요 이상으로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게시글과 이에 관한 누리꾼들의 반응을 보도하면서, 욕설을 포함한 비속어를 여과 없이 공표해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내용을 필요 이상으로 상세히 묘사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폭력 묘사 등)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고 이유

게시글에 대한 누리꾼 댓글 원문을 직접 기사에 인용하고 욕설 등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세히 묘사하여 독자에게 정서적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

사례 26 충격·혐오감 -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주는 내용 ①

의결번호	제2023-578호	매체명	애니멀플래닛
대상보도	애니멀플래닛 2023년 06월 01일 「기름 ‘펄펄’ 끓고 있는 솥에 강아지 내던져 죽게 만든 남성 알고 보니 충격적이게도 경찰관」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지나친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해외에서 발생한 동물학대 사건에 관해 보도하면서 기름이 끓는 솥에 동물을 산 채로 던져 넣어 발버둥치는 장면을 여과 없이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고 이유

동물을 학대하는 장면을 공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충격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

사례 27 충격·혐오감 -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주는 내용 ②

의결번호	제2023-599호	매체명	인터넷 헤럴드경제
대상보도	인터넷 헤럴드경제 2023년 06월 07일 국제일반면 「"급식서 쥐 머리가" 이물질 영상 난리났는데...申당국 "오리 목" 발뺌 [차이나픽]」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7조 (충격·혐오감)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지나친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해외의 한 대학 구내식당에서 음식물에 동물 사체 일부가 혼입된 사건에 관해 보도하면서 해당 사체의 형상을 충분히 식별가능한 정도로 공표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고 이유

동물 사체의 형상을 충분히 식별가능한 정도로 공표한 사진은 독자들로 하여금 충격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어 시정 권고를 결정하였다.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해당 기사 사진을 비식별처리 하였다.

사례 28 기사와 광고의 구분 - 기사형 광고

의결번호	제2023-161호	매체명	매경닷컴
대상보도	매경닷컴 2023년 01월 18일 IT·과학면 「제주 푸른바다와 한라산 한눈에 조망하는 ‘○○○ 요양병원’ 개원」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20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		

심의 개요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다루면서 **의료기관명, 의료인명, 상세주소, 전경 사진** 등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보들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권고 이유

해당 의료기관의 위치정보 등을 게재하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관련 조문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기준) ①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실거나 방송하면서 특정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실거나 방송하여 광고하는 것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병원명, 상세주소 및 의료인명을 삭제하였다.

사례 29 기사 제목 - 본문과 부합하지 않거나 왜곡된 제목

의결번호	제2023-698호	매체명	투데이 플로우
대상보도	투데이 플로우 2023년 07월 11일 연예면 「“○○○ 딸 ○○○..외할머니로 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현재 외할머니 상대로 고소까지 진행 한 상태..(+정리)」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사망한 유명 연예인의 가족 간에 발생한 갈등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사실과 무관한 왜곡된 내용을 제목에 사용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기사 제목)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고 이유

제목과 달리 기사 본문에 성폭행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이에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제목을 사용하여 독자에게 왜곡된 정보로 인한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였다.

사례 30 기사 제목 - 자극적이거나 선정적 제목

의결번호	제2023-432호	매체명	뉴스특독
대상보도	뉴스특독 2023년 04월 03일 뉴스면 「손녀뻘 알바생에게 “XX 축축하게 빨아줄께..” 음담패설한 노인에 공분했다」 제하의 기사		
침해유형	시정권고심의기준 제21조 (기사 제목), 13조(성관련 보도)		
권고사항	1. 대상보도 중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변태적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2. 대상보도의 제목 중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심의 개요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관해 보도하면서, 사건 당시 가해자의 성희롱 발언 중 변태적 성행위 등을 나타내는 표현을 제목으로 사용하여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21조 위반으로 상정하였다.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1조(기사 제목) 언론은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성관련 보도) ② 언론은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혼음, 윤간, 변태적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권고 이유

가해자의 성희롱 발언 중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변태적 성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을 여과 없이 인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여 시정권고를 결정하였다.

심의 결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후 언론사는 해당 기사의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을 완곡한 표현으로 수정하였다.

시정권고 전	시정권고 후
손녀뻘 알바생에게 “XX 축축하게 빨아줄께..” 음담패설한 노인에 공분했다	손녀뻘 알바생에게 입에 못담을 음담패설한 노인에 모두 공분했다